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21.)됨에 따라 현행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개정 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추천 및 위촉과 관련하여 개정 된 상위법의 근거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 함(안 제4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농지법」제17조 및 제34조 및 제35조 및 제37조 및 제45조(발췌 별첨)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호중 “법 제16조”를 “법 제17조”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법 제37조 제2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 및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제47조”와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법 제45조제2항제2호”로 하고,

제6조의2제1항중 “농지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은”을 「농지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농지법」제37조제2항의 각 호를 심사함에 있어”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
4.「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명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조례」	제명 「성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낫표 표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자문) 3. 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각호의 확인 및 관할 지역내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 4. (생 략) 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경영규모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6. (생 략) 7. (생 략)	제4조(현행과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 3. 법 제35조제2항----------- 4. (현행과 같음) 5.「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한국농촌공사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
제6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①각 리장은 군수로부터 법 제47조제2항제2호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전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등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농업인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6조(위원의 추전 및 위촉)①------- ----------법 제45조제2항제2호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6조의 2(소위원회 구성운영)①농지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확인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①「농지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농지법」제37조제2항의 각 호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확인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반영
1. 농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협의	1. <삭 제>	
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관상수 재배 식재의 허가 신고	2. <삭 제>	
< 신 설 >	3.「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	
< 신 설 >	4.「농지법」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